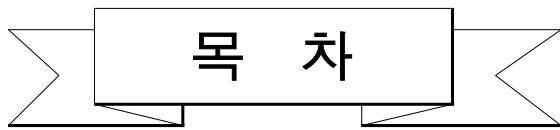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07 - 8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10. 8. (제 4 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연구 경과	1
1.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의결	1
2. 전문위원 제1팀 연구 진행 상황	1
3. 전문위원 제2팀 연구 진행 상황	2
4. 전문위원 특별연구팀 연구 진행 상황	2
II. 양형실무에 관한 종합 분석시스템 구축 방안	2
1.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2. 법원의 양형자료분석시스템 현황	3
3. 시스템 구축 방법	4
4. 시스템의 공개	6
5.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7
III. 과거 양형자료 조사 방법	8
1. 조사 대상 기간	8
2. 조사 대상 범죄	9
3. 경합범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방법	12
IV. 외국 양형제도	13
별책 1. 전문위원 1팀 보고서	1
별책 2. 이호중,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7
별책 3. 신광렬,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	25

별책 4. 김한균, 영국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 제도	53
별책 5. 이주형, 호주 및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 연구	61
별책 6. 전문위원 2팀 보고서	71
별책 7. 박형관, “종합적인 양형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	89
별책 8. 손철우, “양형통계분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41
별책 9. 전문위원 제2팀, “미국 연방 및 각 주 양형기준제 연구 계획”	247
별책 10. 최석윤,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	269
별책 11. 박형관, 양형인자표	289

I. 연구 경과

1.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의결

- 양형위원회 제3차 회의(2007. 8. 20. 개최)

- 팀별 담당 과제

주제	담당
과거 및 현재 양형실무에 관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방안	제2팀
우리나라 양형현황 및 문제점	제1팀
외국 양형제도	1팀 : 영국 등
	2팀 : 미국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특별연구팀

2. 전문위원 제1팀 연구 진행 상황

가. 제2차 회의 개최

- 2007. 9. 19. 19:30 ~ 23:10

나. 주요 안건

- 우리나라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총론)
 -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틀(초안, 신팽렬 전문위원)
 - 우리나라 양형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이호중 전문위원)
- 외국 양형제도 연구
 - 영국 양형제도(초안, 김한균 전문위원)
 - 호주 양형제도(초안, 이주형 전문위원)

3. 전문위원 제2팀 연구 진행 상황

가. 제2차 회의 개최

- 2007. 9. 19. 14:15 ~ 17:45

나. 주요 안건

- 양형실무에 관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방안
 - 종합적인 양형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박형관 전문위원)
 - 양형통계분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손철우 전문위원)
- ※ 주무전문위원의 보고서는 별책 참조

4. 전문위원 특별연구팀 연구 진행 상황

가. 제1차 회의 개최

- 2007. 9. 21. 14:30 ~ 16:00

나. 주요 안건

- 운영 방향
 - 팀장(이호중 전문위원) 및 간사(이주형 전문위원) 선정
- 연구 계획
 - 2007년 10월 하순경까지 : 형벌의 본질 및 목적, 양형기준의 목적
 - 이후 연구 일정은 10월 하순경 확정

II. 양형실무에 관한 종합 분석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
- 구체적 양형기준 설정의 기본 자료 확보
- 양형 분석 단계의 편의 도모

2. 법원의 양형자료분석시스템 현황

가. 양형정보시스템1)

- 종전 양형데이터 베이스 검색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고 양형 자료 업데이트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3월경 개통됨
- 2002. 1. 1. 이후 선고된 1심 본안사건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단기간에 많은 양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급적 사람이 양형자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식을 사용
 - 경찰 사건수사시스템, 검찰 수사지원통합시스템으로부터 피고인 인적사항, 구속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전산적인 방법으로 제공받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에 대하여는 문장 분석 방식(text mining)을 통하여 해당 양형인자를 자동으로 추출
- 양형정보시스템은 범죄빈도수가 높은 300개 범죄에 대하여는 공통양형인자별 선고형 분포를 제공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 사기, 뇌물 범죄 등 5개 범죄(12개 적용법조)에 대하여는 개별 양형인자별 선고형 분포를 제공

나.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2)

-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기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주도하게 개발되어 2007. 8. 7.경 개통됨

1) 양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손철우, “양형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pp. 3-12 참조

2)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손철우, “양형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pp. 12-14 참조

- 양형자료분석관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하여 양형자료를 조사한 후 이를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는, 살인범죄, 성폭력범죄, 뇌물범죄, 마약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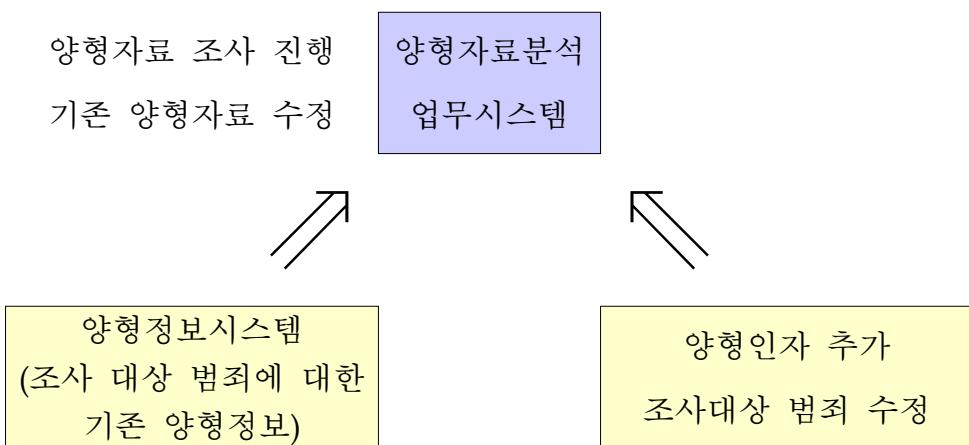
3. 시스템 구축 방법

가. 기존 시스템 개선 - 다수의견

(1) 요지

- 2007. 8. 7. 개통된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양형자료 조사 결과를 입력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의 개선 방향 ◆



(2) 논거

- 양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이고 법원 서버를 공용함으로써 기

존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 가능

- 2007. 8. 7. 개통된 양형자료 분석업무시스템은 양형위원회가 관리 주체
 - 운영지원단이 개발 주도
 - 운영지원단의 지휘를 받는 양형자료분석관이 조사한 자료가 입력
- 독립 서버 구축은 인력 운용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서버 구입 및 시스템 개발 예상 비용 : 약 30억 원
 - 예상 개발 기간 : 약 1년
-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양형자료조사의 목적 달성 가능함
- 양형자료의 공개 문제는 서버 및 시스템 구축과 구별되는 논점
-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능

나. 독립서버 구축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 - 소수의견

(1) 요지

- 양형위원회의 독립서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2) 논거

- 양형위원회가 주관하는 양형정보시스템을 공중에게 공개하여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형위원회 주관의 독자적인 양형정보시스템은 없는 상태로, 법원 양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양형 정보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

- 양형위원회가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독자적인 양형정보시스템이 바람직하고, 독자적인 서버 구축 필요성도 있음
- 장기적으로 양형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양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면 그 접근성 및 공개 범위도 위원회가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독자적 서버 구축이 필요
- 법원의 시스템이나 서버를 공용하는 경우, 시스템 개선의 주체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

4. 시스템의 공개

가. 전문위원 제2팀 논의 내용

(1) 공개 제한 - 다수의견

- 수집된 양형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적절하게 공개 가능
- 통계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양형자료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심의에 지장 초래
-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있음
- 양형기준을 설정한 국가에서 양형자료 자체를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음
- 양형기준 설정 과정의 투명성은 양형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공청회,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달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공개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

(2) 일반인까지 공개 - 소수의견

- 양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간접적으로 양형 편차를 견제
- 양형에 대한 공중의 이해 보장

- 피해자가 양형절차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이므로 시스템상의 정보에 피해자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
- 호주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즈주와 같이 양형정보 공개에 모범적인 사례를 참고하여야 함³⁾

나. 전문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 현 단계에서 시스템 공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함
- 시스템 공개 문제는 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5.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

가. 조사 대상 범죄 수정

- 조사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는 아래 Ⅲ의 2항 참조

나. 양형인자 추가

- 현재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형인자를 보다 세분화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다만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인자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함
- 운영지원단이 사용 중인 양형인자표에 박형관, 손철우 전문위원이 제시한 양형인자를 원칙적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양형인자를 세분화하기로 함

3) 호주 사례는 박형관, “종합적인 양형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 pp. 8-10 참조

다. 입력 주체(양형자료분석관제도)

(1) 전문위원 제2팀 논의 내용

(가) 현행 유지 - 다수의견

- 양형자료분석관은 이미 선고된 사건의 양형자료를 조사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심리에 반영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권 침해와는 무관함
-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수집된 양형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함
- 담당 판사로 하여금 양형인자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판사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충실한 양형자료 조사가 어려워짐

(나) 개선 필요 - 소수의견

- 양형자료분석관이 각급 법원에서 일부 사건을 선택하여 양형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 소지가 있음
- 법률을 개정하여 담당 판사로 하여금 직접 양형인자표를 작성하여 양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여야 함

III. 과거 양형자료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기간

가. 3년안 - 다수의견

(1) 요지

- 2004. 3. 1부터 2007. 2. 28.까지 3년 동안의 확정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2) 논거

- 범죄빈도수가 많지 않은 범죄에 대한 1년분 조사는 통계적인 의미가 미미하고 그 필요성도 의문
- 1년분 조사시 범죄별 양형추이를 파악하기 곤란함
- 법원의 사무분담 변경이라는 요인이 양형편차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어렵게 함

나. 1년안 - 소수의견

(1) 요지

- 2006년도 1년 동안의 확정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2) 논거

-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1년 조사
- 중·장기적으로는 3년 정도 조사
- 다만 적절한 샘플링이 가능하다면 3년안도 찬성 가능

2. 조사 대상 사건

가. 정식재판 청구 사건 포함 여부

(1) 포함 - 다수의견

(가) 요지

-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건만을 제외하고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포함한 모든 공판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함

(나) 논거

-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제외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의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게 됨
- 기소 편차 해소를 위한 구공판 및 구약식 기준 설정 어려움
- 공판이 진행된 이상 그 이유가 공판회부인지, 정식재판청구

인지에 따라서 조사 여부를 구별할 근거 없음

(2) 불포함 - 소수의견

(가) 요지

-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제외한 공판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함

(나) 논거

- 구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더 큼

나. 조사 대상 사건의 한정 여부

(1) 한정 - 다수의견

(가) 요지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사건을 한정

(나) 논거

- 제한된 인력과 조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3년 동안의 모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함
- 조사 대상 사건을 구공판 사건으로 제한하고, 구약식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배제하는 것 역시 전수조사가 아님
 - 구약식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배제하면 어차피 일부 범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배제된 범죄에 대하여도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

(2) 구공판 사건 전체(공판회부 사건 포함) - 소수의견

(가) 요지

- 2006년도 1년 동안의 구공판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 진행

(나) 논거

- 일부 죄명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나 신뢰도가 떨어짐

- 향후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양형조사를 할 수도 있으므로 비효율적임

다. 조사 대상 사건의 한정 방법

(1) 제1안 – 무작위 표본추출

(가) 요지

- 3년에 해당하는 사건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사건번호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나) 논거

-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를 하는 이상 일반 사회과학적 표본 추출방법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양형현황은 같은 범죄 사이에서의 차이와 서로 다른 범죄 사이의 차이를 모두 분석하여야 하는데, 범죄유형별로 모집단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양형현황을 파악하지 못할 우려 있음
- 범죄빈도수가 매우 적은 범죄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통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범죄유형을 고려한다면 작위적인 추출이 될 수 있음

(2) 제2안 – 범죄유형 고려

(가) 요지

- 범죄빈도수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범죄유형 및 죄명을 한정한 후 범죄유형별로 무작위 추출

(나) 논거

- 법원조직법 부칙은 ‘국민적 관심’, ‘범죄 빈도수’ 등을 기준

으로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자료 조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고려가 필요함

- 3년 동안의 전체 사건이 동질적인 모집단이 될 수 없음
-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경우 빈도수가 낮아 양형조사에 의미 없는 범죄까지 포함될 수 있음
 - 범죄 빈도수가 지나치게 낮은 범죄의 경우 모집단 자체가 작으므로 양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분석 단계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음

라. 조사 대상 천수

-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 수 684,294명 중 70,000명을 조사하기로 함

3. 경합범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방법

- 경합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다만 그 조사 방법에 대하여는,
 - 경합범 전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중의 구별 없이 상세한 양형조사를 하자는 견해(제1안)
 - 대표범죄는 상세한 양형조사를 하되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대표범죄의 양형인자에 포함시켜서 조사하자 는 견해(제2안)
 - 대표범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경합범의 조사 범위를 경합범의 결합 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자는 견해(제3안)가 제시됨
- 논의 결과 제3안과 같은 방법으로 경합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집약됨

IV. 외국 양형제도

- 외국 양형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충분한 연구 시간이 부족하여 주무전문위원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 일부 전문위원은 보고서 초안 제출
- 전문위원 제2팀에서는 중간보고의 형태로 주무전문위원별 보고서 목차를 담은 「미국 연방 및 각 주 양형기준제 연구 계획서」(별지 3 참조)를 제출함
- 10월 하순경까지 팀별 논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